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8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0.

발의자 : 윤준병 · 박민규 · 주철현

조계원 · 정동영 · 박홍배

이원택 · 박희승 · 허영

김우영 · 김태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,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, 해당 규정들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,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근로자와 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29조의4).
- 나.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85조의6).
- 다.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87조).
- 라.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88조의2).
- 마.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96조).
- 바.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98조의9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제85조의6제1항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제87조제2항 본문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օ)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분 합계액의 100분의 20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(④ (생 략))	(④ (현행과 같음))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<u>2025년</u>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.	<u>2030년</u> ---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(⑥ ~ ⑧ (생 략))	(⑥ ~ ⑧ (현행과 같음))
제29조의8(통합고용세액공제) ①	제29조의8(통합고용세액공제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	⑤ -----

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(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	
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<u>2025년</u>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	-----. ② ----- -- <u>2030년</u> -----

합부동산세법」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)가 2024년 1월 10일부터 <u>2025년</u> 12월 31일까 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 세대 1주택자로 본다.	----- ----- ----- <u>2030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(③ · ④) (생 략)	(③ · ④) (현행과 같음)